

■ 법률 칼럼

###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적정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 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 오십견(동절견)에 대하여

동절견(Frozen shoulder)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의학용어로는 유착성관절막염 (Adhesive Capsulitis)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절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길 수도 있지만(특발성, idiopathic), 다른 질환이 있을 때 동반되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동절견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약 5%정도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동절견의 유병률이 20%, 그리고 특히 오래된 일형당뇨를 앓는 경우에는 평생 유병률이 76% 까지 올라갈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뇨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이상지질혈증,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에 있을 경우 동절견이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부근 위팔뼈의 골절, 어깨 수술 등의 어깨 손상 후 이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동절견의 발병은 초기에 관절낭 주위로 염증이 생긴 후 유착과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어깨 관절낭이 수축되고 두꺼워지며 관절 공간이 좁아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절견은 임상적으로 보통 다음의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첫번째는,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초기로서 광범위하고 심한 어깨 통증이 특히 밤에 심하게 나타나며 2-9개월에 걸쳐 서서히 관절이 뻣뻣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단계로, 관절 강직도가 심해지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더욱 제한되나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로 4-12개월 정도에 걸쳐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기로 5-24개월에 걸쳐 관절 강직이 나아지고 어깨의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시기입

니다. 동절견이란 질환 자체가 2-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 없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발병의 어느 단계에서 의사를 보게 되냐에 따라 그 의사가 돌팔이가 되기도 하고 명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오십견으로 고생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낫지 않았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금방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사의 차이보다는 동절견이라는 질환의 진행 과정 특성상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절견의 진단은 주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하게 되며 엑스레이 등의 영상 검사는 진단을 위해 필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절견은 대부분 스스로 좋아지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어깨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과 혼동되기도 쉬워서, 진단에 맞는 치료법을 받기 위해서는 꼭 주치의나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는 어느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밝혀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한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동절견의 치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요법, 물리치료 그리고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보존적인 방법부터, 침습적인 수술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